

진안군 질의 답변

□ 질의

1.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중 시료채취와 보존 내용에 관하여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틀어 2~3분 흘려보낸 후 시료를 채취한다」 상기 내용이 2013년 까지는 (환경부 고시 제2013-136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2018년 내용에는(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66호) 삭제되어 있어, 상기 내용이 언제부터 삭제(개정된 고시문 연혁)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할 시, 상기 내용의 방법에 의한 채수와 즉시 채수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어느것이 시험기준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한(2019.6.7.) 교육자료에는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내 미생물 시험용 시료의 채취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제2013-136호) “ES05130.b 시료채취와 보존” 부분에서 “2.0 미생물 시험 시료”에 상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생물 시험을 위한 수도꼭지수의 채취는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각 항목의 시험방법 중 “5.0 시료채취 및 관리” 부분에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개정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66호의 “ES05130.b 시료 채취와 보존” 부분에서 중복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2.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는 동 고시에 근거하여 각 항목별 시험방법 “시료채취 및 관리”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미생물 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각 항목별 시험방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도꼭지를 틀어 2분~3분간 흘려비린 후 시료를 채취한다’를 따르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제2기 먹는물 시료채취 기술인력



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시료채취기록부

지하수 수질검사 시료채취 확인서(기록부)

과	원	과	원

1. 시료내용	
관리인이 (길자·특성·근거)	지하수명(), 식용유생명(), 농·어·축산물(), 기타(): 비가 풍(), 생기(검사용)
시료명 (지하수 유도)	먹는물, 지하수(광·농·공) 원수/정수 여부
시료 채취일	20 년 월 일 시
지하수 개발·이용자	상호(영문) 상 명 (인)전화번호 : 주 소
세워중소(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위치)	
시설명	시료채취방법(도)
현장측정결과	
2. 시료 세워지	(식금) (식금) (설명) (설명) (인) (인)
기타 참고사항	

먹는물 시료채취 순서

- ❖ 수도꼭지를 깨끗이 닦아 이물질 및 먼지 제거
- ❖ 수도꼭지를 열어 3~5분 정도 훌려버림
- ❖ 수도꼭지를 라이터나 토치램프 불꽃으로 멀균
(알콜사용 가능, 알콜이 시료에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
- ❖ 수도꼭지를 열어 2~3분간 훌려버림
- ❖ 멀균 채수용기 내부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로 3회 이상 세척 후 가득 채움(용기 입구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
- ❖ 마개를 달을 때에는 용기의 입구나 마개 속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